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중국 경내로 유입된 물품 수입세의 일부상품범위 조정에 관한 통지**세위회[2016]26호해관총서:합리적 소비를 이끌어 가고자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, 화장품소비세 정책을 조정하였으며 이에 중국 경내로 유입된 물품 수입세 중 화장품의 징세문제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다.1. <중화인민공화국 물품 수입세율표> 중 세목 3 “화장품”의 명칭을 “고급화장품”으로 조정하고, 징세상품범위와 소비세를 징수하는 고급화장품의 상품범위는 일치한다.2. 본 통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집행한다.국가원관세세칙위원회2016년9월30일 |  | **关于调整进境物品进口税部分商品范围的通知**税委会﹝2016﹞26号海关总署：　　为了引导合理消费，经国务院批准，化妆品消费税政策进行了调整，现将进境物品进口税中化妆品的征税问题明确如下：　　一、将《中华人民共和国进境物品进口税率表》中税目3中“化妆品”的名称调整为“高档化妆品”，征税商品范围与征收消费税的高档化妆品的商品范围一致。　　二、本通知自2016年10月1日起执行。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　　2016年9月30日  　　 |